

From:

To: 0625242876

21/12/2022 16:36

#260 P.002/004

모두의러닝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제약조건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모두의러닝'(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회사'가 취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범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선지원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민간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료교육 훈련
계약기간	2022.12.21 - 2022.12.31	훈련과정명	방화비서
훈련인원	5명	훈련비상	지비부담금 (전체준비비)
교육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이오-6690-1748 dofkdl174@naver.com	사업장관리번호 (교육관리번호 11자리)	409-90-37592
결제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이체	전자계신서(문세) 발령 이메일	dofkdl174@naver.com
훈련비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1월: '고객'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회사'에 납부 <input type="checkbox"/> 2월: '고객'이,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회사'에 납부하고,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제2조(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훈련기간에 위탁 훈련생들이 성실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 받을 수 없었던 경우 '회사'의 사전협의의 하에야 한다.

제3조(수교) '회사'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 수요기관을 종래인 유관성에 대해서는 수교 처리하고 수요율을 받는다.

제4조(성실의무) 1.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 의거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허위 신청된 명의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규약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회사'가 책임질 것이다. 3. '고객'은 원활한 훈련이 지체될 경우 '고객'이 고용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의무기 있다. 4. '고객'은 교육 훈련생이 부정행위 등으로 훈련을 받지 않도록 주지사항 의무가 있다

제5조(홍보의무) '고객'은 훈련생의 명동사항(출처, 직적, 전보 등)을 함 시 즉시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정부지원**
-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체결된 인원으로 한다.
-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총액으로 하며 '고객'은 훈련비용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 계약을 실시한다. 2. '고객'은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보험 및 시정규직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자기부담금 등 교육 훈련 전 선 지급(교육 개강일, 7일전)되어야 하며, 교육 개강일 기준으로 훈련인원의 명단으로 명단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환급을 위한 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명단 될 수 있다. 교육 훈련 미수료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환급 받지 못한 훈련생 기간 종료 후에도 교육 미수료로 인해 정부지원금 환급이 늦어진 경우, 해당 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추가 납부한다. 5. 재수강을 실시 하였음에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의 정부지원금 미환급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추가 납부한다. 6. 정부지원 환급과 부채상환 등으로 환급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7. 고용보험 납부 제반사항은 '고객'이 지체된 경우 '고객'은 고용보험료 등 지급 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이 지체되어 정부지원금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8. 훈련인원 확정 후 '지비부담금', 훈련 종료 후 '정부지원금'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계신서를 발송한다.
- 유료교육**
-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계약일로부터 해당 계약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체결된 인원으로 하며, 수납일(개강 주 7일 이내) 이후 확정된 인원으로 한다.
-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훈련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한 교육비이며, 교육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 2. '회사'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7일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일부터 7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2년 12월 21일

(고객)
 상호명: 주식회사 모두의러닝
 사업자등록번호: 272-81-01049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6층 621-625호(가산동, 가산 하우스디 와이즈타워)

(회사)
 상호명: 주식회사 모두의러닝
 사업자등록번호: 272-81-01049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6층 621-625호(가산동, 가산 하우스디 와이즈타워)

대표이사 이영신

대표이사 이영신

